

「2015년 보조금교부결정통지」 **친환경무상급식비(6~8월분) 지원사업**

2015년 『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』을 위한 6~8월분 친환경무상급식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아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조사업명 :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

보조사업자 : 공립초등학교(24개교), 중학교(18개교)의 장

교부결정액 : 금1,382,355,000원(금일십삼억팔천이백삼십오만오천원)

교부조건

이 보조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.

1.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서울소재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「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」에 한해 사용하며,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동 보조금 집행 시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3.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급식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성북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
4. 지도 감독 등
 -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
 -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성북구청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

- 식재료 안전관리(위생점검 및 수거검사)
 - 보조사업자는 동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성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(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관리와는 별개로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.
- 현지조사 및 회계검사
 -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또는 성북구청장의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,
 - 보조사업자는 본 보조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장 또는 성북구청장의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,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.

5. 실적관리 및 정산

- 정산제출
 - 보조사업자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,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을 통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각종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.
 - 정산잔액 반납
 -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연도 회계연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 - 정산결과 조치
 - 서울특별시장 또는 성북구청장은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반납 및 감액조치 할 수 있습니다.
 -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
 -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
 -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
 -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
6.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첨 「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세부 집행 기준」(추후 별도 송부)을 따라야 합니다.

2015년 6월 일

성 북 구 청 장